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수출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모집하여, 수출 우수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 강화

* 기존 수출기업 지정제도(수출두드림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를 통합 개편

□ 모집규모 : 수출바우처 약 2,400개사 내외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1,000개사 내외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기업은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수에 포함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3. 4. 1 ~ 2024. 2. 29(11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023. 4. 1 ~ 2024. 12. 31이며, 수출바우처는 지정 첫해(23년)에 일괄 발급, 연 1회 모집 및 최대 2회까지 지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 서비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단, 서비스 완료 확인을 받고, 운영기관에서 서류 미비 등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정산 보완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수출바우처와 별도의 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 대상 유관기관의 우대를 지원
 - 지정 첫해에 수출바우처 일괄 발급,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리·보증료 등 지원 우대, R&D 전용 트랙(글로벌 강소 대상) 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3.4.1.일 기준)
 -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1) 단,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 '22년 참여기업 중 협약 기간이 '23.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가능하나, 협약 종료(23.2.28) 기준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2) '23년 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 또는 연기된 전시회 서비스는 사용으로 간주
 - * 1. '22년 해당 전시회 내용이 기재된 수출바우처 사용계획서 2. 부스신청서(인보이스), 3. 계약금 환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23년 사업 신청 시 "기타"서류에 업로드 必
- 3)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예외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캠핑 및 배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 대상	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예정인 기업 ■ 튼튼한 내수기업	30 6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유망단계(500 개사)	40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성장단계(300 개사)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강소단계(200 개사)	100
강소+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강소+단계(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이고, '11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	120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 신청기업 중 평가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 사례 >

- ①수출바우처, ②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③수출바우처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구분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비고
내수 초보	사례1	O	- 내수, 초보는 수출바우처만 신청 가능
	사례1	X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은 희망하지 않고, 수출바우처만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유망 성장 강소	사례2	X	- 수출바우처는 희망하지 않고,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만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바우처 사용률이 미흡하여 참여제한 중인 기업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시작일 기준 수출바우처 협약 유효 기업인 경우(22년 2차기업) 신청 가능
	사례3	O	-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수출실적은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必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서비스수출실적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2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KTnet 발급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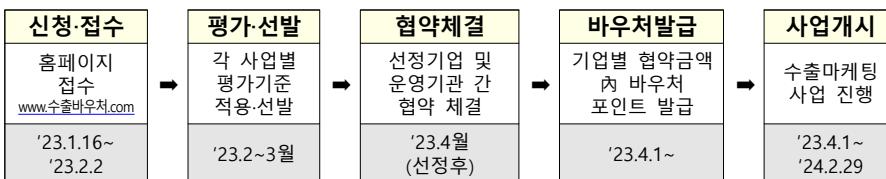
- (바우처 출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 진행 절차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건으로 지원 불가
- 2023년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서 제외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3. 1. 16(월) ~ '23. 2. 2(목)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신청 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제출
	⑤	'19~'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선택 (희망시)	⑧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⑨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⑩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⑪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0~'22년)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②) 참가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강소단계 중 R&D 지원 희망기업) 첨부 서식 4~6 서류 추가 작성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⑪)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기타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 무역협회 및 KTNET, 기타기관 발급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 직수출실적은 일괄조회 예정이므로 별도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평가 절차

사업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강소
(1 단계) 서류 심사	O	O
(2 단계) 현장 평가	O	O
(3 단계) 발표 평가	X	O

- ①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브랜드K 기업의 경우 우선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
- ②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③ (발표 평가) 지자체, TP 등 심사를 통해 최종 평가(글로벌 강소 트랙)

4.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 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 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 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개발 등 일부분야는 단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내용

□ 공통 지원내용

* 세부 내용은 별첨 파일 참조

- ①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 등 참여 우대,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등

-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강소단계 추가 지원내용

- ① **기술 개발사업(R&D) 전용 트랙 마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전용트랙(80개사)을 신설하고, 별도 평가 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대 4년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연 5억원)

** 단, R&D 출업체 대상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추후 출업체 타 대상사업 수행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② **지역 자율지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 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지자체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 '23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既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6. 가점사항

□ 수출바우처사업 가점항목

구 분	가 점 항 목	내수 트랙	초보·유망·성장· 강소·강소+ 트랙
1	이노비즈 기업	1	1
2	메인비즈 기업	1	1
3	명문장수기업	1	1
4	벤처인증기업	1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1
6	사회적 경제기업	1	1
7	수워탁 우수기업	1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1
9	장애인기업	1	1
10	지역특구 입주기업	1	1
11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타기업	1	1
12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
13	혁신조달기업	1	1
14	TIPS-R 졸업기업	1	1
15	원전 수출기업	1	1
16	해외건설,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수주 기업	1	1
17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1	1
18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	1
19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	1
20	R&D 우수기업	1	1
21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1	1
22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1
23	글로벌혁신톤구 입주기업	1	1
24	BIG3 기업, 소부장 스타트업	1	1
25	수출유망중소기업	2	2
26	초격차 스타트업	5	3
27	팁스, 포스트팁스 참여기업	5	3
28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5	3
29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5	3
30	직수출이 없는 기업 중 '22년 간접수출 100만불 이상 보유기업	5	-

1) 내수는 최대 10점, 초보·유망·성장·강소·강소+는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2) 가점항목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7.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 ex)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 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유효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신규 지정된 기업은 기존 지정증 반납 필수
- 월드클래스+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은 불가 하나, 수출바우처는 신청 가능
-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바우처 협약 미종료기업 및 바우처 사용률로 신청제한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하고, 수출바우처 신청은 불가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운영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8. 문의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서식1-참가신청서】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입력(참여기업 참고용으로, 스캔본 업로드 불필요)

중기부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서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업종	제조업 / 비제조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지역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공장			
	지점(1) (해외 포함)			
지점(2) (해외 포함)				
담당자/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0년	'21년	'22년(예정)	
최근 3개 년도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직접	달러	달러	달러
	수출액 (달러)	달러	달러	달러
	간접	달러	달러	달러
합계	달러	달러	달러	
종업원수(명)	명	명	명	
수출업력	년	사업참여이력	신규(), 재신청()회 (참여년도:)	
주요 인력 운영	해외마케팅 영업 인력	없음	있음	부서명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출 현황 및 목표	수출품목 및 서비스	현재		
	계획			
	주요수출국가 (3개국 이내)	현재		
	계획			
	목표금액(달러)			
주요 계열사	해당 시 작성			
신청 사업	<input type="checkbox"/> 수출바우처+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수출바우처 <input type="checkbox"/> 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중 택1 * 신청마감 후 변경 불가			
사업 개요	* 동 사업 참여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작성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홀特斯), 3.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국세 및 지방세 원납 증명서, 5.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6. 기업(신용)정보동의서, 7.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식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13p~17p)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비우체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체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조회의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 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체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부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순익계산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을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체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체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기관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이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本国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용에 관한 내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이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 kotra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 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발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 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5. KT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긍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제공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업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T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통)거래 종료일이란 증기부·증진공·지방청·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기부·증진공·kotra 귀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증기부')·증기부·증진공(이하 '증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증기부·증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증기부·증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수출비우처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권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기부, 증진공, kotra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증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증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을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권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대표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회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3-사업계획서]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수출마케팅 추진 계획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정부 지원비율		
프로그램	추진기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계
1	~			
2	~			
3	~			
4	~			
5				
.				
.				
.				
신청 ()건	사업기간 : ~	천원	천원	천원

상기 수출마케팅계획은 기업 자체판단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수출마케팅 세부 추진 계획

가. 기업현황

회사명		설립년월일						
		지정사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원이력(연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천원)	'20년		'21년		'22년(예정)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년		'21년		'22년			
수출액 (단위 : 달러)	'20년		'21년		'22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수출국가	(총 개국)							
수출상품(제품)								

나. 제품(상품)현황 및 수출필요성

수출 제품(상품) 개요 (내수기업의 경우, 수출예정 품목 기술)

구 분	세부 내용			
생산(취급)품목*				
제품 개발현황(택일)	개발중(R&D진행)	개발완료	시제품 생산	양산단계
용도, 특성 및 수출현황, 수출 가능성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시장점유율	국내 (Domestic)		국외 (Overseas)	
	- 시장규모 :		- 시장규모 :	
경쟁업체 현황**		- 시장점유율 :		
국내 :				
국외 :				

* 주요 생산(취급) 품목 개요는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 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수출(확대) 필요성

세부내용	
------	--

다.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목표시장

희망(기) 진출시장	
진출 희망국가	
선정사유*	
자체진행현황	

*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현황(현지 시장의 니즈), 자사 제품(상품)의 경쟁력 등을 기재

목표고객군

목표고객군	
선정사유*	

* 제품 및 진출시장의 특성상 목표고객을 설정한 사유를 기재

라. 해외마케팅 준비현황

○ 수출 준비현황

수출인프라 구축도	
전담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 여부/경로	
해외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여부	
기수출 여부	
기타	

마. 수출마케팅 목표

○ 향후 목표

세부내용	- 단기 (1년내)
	- 중기 (2~3년)
	- 장기 (5년)

[서식4-(강소 트랙 전용) R&D 사업계획서] ※수출액 500만불 이상, 강소트랙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 종 R&D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만 작성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R&D 사업계획서

□ 기술개발 현황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2023년 (추정)	2024년 (추정)
매출액(A)						
연구개발투자액(B)						
연구개발투자비율(B/A)						
연구소 보유여부(연구소/전담부서)						

○ 주력 사업(제품) 현황

주력 사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주력 제품(사업)에 대한 소개(시장영향력, 핵심기술, 용도, 주기능 등) - 최근 3년간 주력제품 변화속도와 수익성 분석을 통해 주력제품 변화 속도 전망 			

최근 3년간 주력제품 변화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 1위	○ 제품(%)	○ 제품(%)	○ 제품(%)
	매출 2위	○ 제품(%)	○ 제품(%)	○ 제품(%)
	매출 3위	○ 제품(%)	○ 제품(%)	○ 제품(%)

*()는 매출액 대비 해당제품의 매출비중

○ 핵심기술 보유현황

핵심기술 보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현황과 제품, 인력 적용 현황을 연계하여 작성
--------------	--

○ 연구인력 현황

구분	총 원	박사	硕사	학사	기술기능
2020년도	명	명	명	명	명
2021년도	명	명	명	명	명
2022년도	명	명	명	명	명
상시 종업원수('22)	명	연구인력 비중('22)		%	

○ 최근 3년 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국내출원(건)				
국내등록(건)				
해외출원 (건)	미국			
	일본 등 아시아			
	유럽(EU)			
	기타			
해외등록 (건)	미국			
	일본 등 아시아			
	유럽(EU)			
	기타			

□ 기술확보 전략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 주력제품별 적용되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거나 개선을 할 계획이 반영된 추진전략 기재
- ① 추진목표에 제시한 성과목표(R&D투자액 등)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 향후 주력제품별 핵심기술 정의 및 확보계획

주력제품	핵심기술	핵심기술 정의	확보계획

○ 핵심 기술개발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기술개발 추진체계>	
○	
○	
○	

[서식5-(강소 트랙 전용)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①업체명	②접수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⑤연구개발비 투자비율(단위: 천원)						
연도	①재무상태표 (개발비 총증가액)	②포괄손익계산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⑤연구개발비 합계 (=①+②+③+④)	⑥매출액 (=⑤)/(⑥)*100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19					
2020						
2021						
※ 불임 서류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2.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 상기 불임서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전담기관에서 필요시 제출 요청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연구개발비 개념

-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서식6-(강소 트랙 전용)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외투기업의 실질적 지배여부에 대한 경영자확인서

①업체명		②접수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신청기업에 투자한 해외기업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②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이상 선임하는 경우
 - ③ 해외기업이 외투기업의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④ 해외기업이 외투기업과 다음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해외기업과 외투기업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외투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외기업 또는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⑤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외투기업이 해외기업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관계에 있는 경우
 - ⑥ 외투기업이 해외기업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본 기업은 위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본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